

교육부령

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
연 월 일	2021. 1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보다 효율적인 독학학위제 운영을 위해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할 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, 독학학위제 시험의 일부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각종 시험, 자격, 면허의 타 법령상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 및 유예기간 근거 마련(안 제3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

1) 현행 독학학위제의 과정별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하거나,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함

2) 특히, 전공분야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

나.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시험, 자격의 근거 법령 현행화(안 제4조의2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제1호 개정)

1) 현 시행규칙에 따르면 舊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교양과정, 전공기초, 전공심화 과정의 시험 면제가 가능하나, 「사법시험법」 폐지('17.12.31.) 이후 「변호사시험법」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운영되고 있어, 변호사시험을 면제 시험범위에 추가함(안 제4조의2제1항제1호, 같은조 제2항제3호)

- 다만,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어도 해당 시험의 기존 합격자에 대한 독학학위제 일부과정 시험 면제는 계속 유지함

- 2)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이 새로이 시행('21.4.8.) 되면서 기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를 두고 있던 “경영지도사”와 “기술지도사”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제4조의2제3항제1호)

다. 기타 용어 현행화(안 제2조제2항 개정)

- 1)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」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“지역학습관”을 “지역대학”으로 용어 변경
- 2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」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므로 “시·군 및 자치구”를 “시·군 및 자치구에 두는 교육지원청”으로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치구”를 “자치구에 두는 교육지원청”으로, “지역학습관”을 “지역대학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시험과목 및 평가영역)”을 “(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시험과목”을 “전공분야 및 시험과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험과목을 변경”을 “전공분야 및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전공분야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사법시험 및”을 “사법시험, 「변호사시험법」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사법시험·군법무관임용시험”을 “사법시험·변호사시험·군법무관임용시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폐지한 전공분야의 경우 학위를 미취
득한 학적보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통해 3년의 유예기간을
둔 후 시험을 전면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) ① (생 략)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·군 및 <u>자치구</u> 의 교육장,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<u>지역학</u> <u>습관</u> 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(이하 “시험”이라 한다)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2조(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자치구</u> <u>에 두는 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<u>지역대학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<u>시험과목 및 평가영역</u>) ① (생 략)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시험과목</u> 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고시한 <u>시험과목</u> 을 <u>변경</u>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<u>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전공분야 및 시험과목</u> ----- -----. ---- <u>전공분야 및 시험과목</u> 을 <u>변경하거나 폐지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2항 후단에 따라 <u>전공분야</u> 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<u>유예기간</u> 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·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)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.

1. 「사법시험법」에 따른 사법 시험 및 「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군법무관임용시험

2. ~ 8. (생략)

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”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.

1.·2. (생략)
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

4. ~ 10. (생략)

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,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

제4조의2(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·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) ① -----

1. ----- 사법 시험, 「변호사시험법」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 -----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-----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에 따라 면제하되,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 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1. 제1항제1호의 <u>사법시험·군법무관임용시험</u> 및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(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: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2. ~ 4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 <u>사법시험·변호사시험·군법무관임용시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